

第15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11.21.~11.2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61
- II.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63
- III.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75
- IV.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77
- V. 부 록
 - 1. 의사일정안 83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5
 -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7
 - 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1
 -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1
 -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5
 -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5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6.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7.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훈 위원 외 2인)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7.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고규강 위원 외 4인)
8.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실시된 제12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김천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은 불미한 제가 교육가족과 교육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 12대 충청북도 교육감에 당선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무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저의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즐겁고 신바람나는 학습공간이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께는 행복하고 보람찬 일터가 되도록 하며, 학부모님들께는 믿음과 기쁨을 드리는 학교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선거로 인하여 우리 교육계에 있었던 다소간의 어수선�함과 갈등을 하루빨리 아울러서 교단의 안정을 되찾고 본도 교육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정무 초등교육과장께서 출장으로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8일 고규강 교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청구서가 제출되어 2003년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징계청구서를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같은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징계의 건 처리를 위한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1월 13일 공고 제2003-11호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 보고를 비공개로 들으신 후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후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의 건을.....

● 의장 이상일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 진옥경 위원

이의가 있으신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이상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요?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이상일

잠시만 기다리세요.

“징계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회의규칙 제57조제4항 규정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시면서 그에 관한 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보고를 하시고, 소위원회에서 징계에 관련한 절차는 비공개로 하시되, 본회의에서 공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회의규칙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 문건은 언제까지나 비공개입니까? 징계위원들이 전부 징계를 결의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그것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도민들이 알아야지요. 그것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지금 모든 공문에 다 나가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만 그것을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심의하고 이런 소위원회 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에 속하지만 이것의 경과라든지 위원들의 판단은 도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회의조차 이것이 비공개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의장 이상일

저기, 진 위원님. 나중에 징계·자격심

사소위원회에서 한 뒤에 그 내용은 공개 회의에서 공개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보고서까지도 공개하시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서까지를 모든 경과로써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일

결과만 보고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소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할지언정 본회의에서조차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일

우리가 잘됐든 못됐든 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의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본회의는 이 안건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 개의 안건을 포함해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 이것만을 유독 징계회의에 결부시켜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세 개의 안건과 함께 본회

의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공개가 되어야 마땅하고, 소위원회는 그 안건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한다한들 지금 이것은 공개해야 옳다고 봅니다.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안건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도 공개해야 일과 징계에 관한 공개하지 아니할 일이 항목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은 내용에 관련한 것이죠. 지금 절차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비공개로 합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지금 공인에 관련한 것들은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다루는 안건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소위원회와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여기에서 제안설명까지 위원들이 하면서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라는 것은 징계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소위원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이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달라서 다른 안건은 다 공개해도 될 일이고, 징계에

[제159회-제1차 본회의]

관한 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본회의죠.

(장내소란)

● 의장 이상일

방청석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안됩니다. 방청석에 발언권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지금 이것이 본회의는 제159회 본회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59회 회의에 제1차 본회의에서 3개의 보고의 건이 올라왔고, 거기에 관련한 보고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계의 건에 관련한 보고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영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고 말함)

● 의장 이상일

잠깐 계세요.

진 위원님, 저기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 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양해할 수 없습니다. 공개하십시오.

● 의장 이상일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지금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 1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남훈 위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2003년 7월 14일 개정된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위원 자리로 돌아감)

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2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남훈 교육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 **진옥경 위원**

네

● **의장 이상일**

나와서 발언하시죠.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진옥경 위원**

번번히 의사진행발언을 앞에 나와서 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만 오늘은 저에

관한 징계가,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제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의안건에 관련해서 저에 관련한 징계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보고사항까지를 마쳐야지 안건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소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공개된 보고를 거친 후에 안건으로 성립되면 그것이 소위원회로써 넘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을 표결로써, 위원들간의 표결로써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한 정확한 해석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떤 법조항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또한 이것을 표결로 강행한다고 해서 그 해석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은 부의되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소위원회로 아직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된 상태의 본회의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보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11시 44분)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그 건은 보고가 있을 겁니다. 보고 없이 채택은 안하는 거니까 보고를 하되.....

● 진옥경 위원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고 방망이를 두드려서야죠. 안건으로 성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없기 때문에.

7.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시 2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옥경교육위원의 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옥경 교육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43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이상일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징계·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징계·자격심사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의장과 당사자인 진옥경 교육위원을 제외한 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 진옥경 위원

본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징계에 관련한 것은? 좀 전에 고규강 위원이 읽으신 보고문 말씀입니다.

● 의장 이상일

예, 잠깐만.....

회의록은 우리 보관용만 기록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회의록에는 공개가 안된다고 그러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죠?

● 의장 이상일

그 회의규칙에 그건 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보고문과 저한테 온 징계청구서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큰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없겠지만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은 저에게 온 징계청구서와 서명·날인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앞에서 말씀드린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은 즉시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목,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2일 (토요일) 11시 08분

議事日程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옥경교육위원 징계의건에 대하여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3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대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진옥경교육위원 징계의건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제159회-제2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11시 05분

議事日程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훈 위원 외 2인)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5분 개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 의장대리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일 의장님께서서는 충청북도 교육삼락회 제3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늦으신다는 연락을 받아 부의장인 제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서는 충청북도 교육삼락회 제35차 정기총회 및 연구학교보고회 참석으로, 정무초등교육과장과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장학지도 관계로,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대리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중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 외 2명의 교육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과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에 비교 내용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의 비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 사용료에 관

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교육연수원 경비 징수, 도서관·학생회관 사용료 징수, 학생회관 사용료 감면을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 등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조명과 관련하여 조문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명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

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고규강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

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고 규 강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김 남 훈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義 事 日 程 (案)

第159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11. 21. ~ 11. 25.(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월 21일(금)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3. 11. 21. ~ 11. 25.(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진옥경)징계의건(청구보고)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11월 22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진옥경)징계의건 처리 <input type="checkbox"/> 산 회	※11.23.공휴일
11월 24일(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11월 25일(화) (11:00)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59-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제출년월일	2003. 11.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9-1호
----------	---------

발의년월일 : 2003. 11. 12.
발 의 자 :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1. 개정이유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2002. 12. 26. 개정) 및 같은규정시행규칙(2003. 7. 14. 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
-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함.
(안 제2조제5항)
-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 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 함.(안 제7조)
-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발췌분 붙임참조)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및 소위원회위원장, 의사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⑤제1항의 청인과 제2항의 직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교부·재교부"를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인의 인쇄사용) ①의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사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의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되어 비치·사용중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공인	(인 영)	등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또는 210mm×297mm(한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④ (생략)</p> <p>⑤ (신설)</p>	<p>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및 소위원회위원장, 의사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제1항의 청인과 제2항의 직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p>
<p>제5조(교부 및 등록) ①의사국장은 공인을 새겨 이를 교부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5조(등록)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p> <p>②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p>
<p>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의사과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의사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의사과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의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p>

③ (신 설)

④ (신 설)

제7조(공고) ①의사국장은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생략)

(신 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 . 등록·재등록
2. 등록·재등록
3. 등록·재등록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인의 인쇄사용) ①의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사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의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호
------	---	---

<p>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p> <p>개 정 참 고 자 료</p>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

제 출 자	김남훈 교육위원의 2명
제출년월일	2003. 11. 12.

관계규정(발췌분)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12.26.]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1998.7.1, 1999.8.7>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의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7.1, 2001.1.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1999.8.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5.3, 1999.8.7, 2001.2.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8.7]

제38조 (등록) ①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9.8.7>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개정 1999.8.7>)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상에게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시·군 및 자치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9.8.7, 2001.2.14, 2002.12.26>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40조 (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의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8.7, 2001.2.14, 2002.12.26>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 2003. 7.14.]

제52조 (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54조의2 (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9.2]

제55조 (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의 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 (관인의 등록)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제3차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은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4]

제57조 (재등록 및 폐기)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4]

제57조의2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개정 2001.2.14>)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 2001.2.14>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1999.9.2, 2001.2.14, 2003.7.14> [본조신설 1996.5.28]

제58조 (공고의 내용) 관인등록기관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 2003.7.14>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59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49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지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11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2
----------	-------

제출년월일 : 2003. 11.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기 타 : 입법예고('03. 09. 05 ~ 09. 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를 “대하여 숙식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 ①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제1항중 “(별표 1)의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용료)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이용) ①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 및 장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6조 및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 신청하는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11조의2 관련)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강 당		75,000원		
	전시실 (내부)		20,000원		
	전시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냉 방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제천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1인기준
			단체	400원	"
		일반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	"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단체	400원	"
		일반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	"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자탈지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별표 3]

□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33조 관련)

(단위:원)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학생 종합수련원	식비	진천시설	2,500	2,500	2,500	○ 1인 1식 기준
		보령시설	2,500	2,500	2,500	"
	숙박비	진천시설	무료	무료	3,000	○ 1인 1박 기준
		보령시설	1,000	10,000 (20,000)	20,000 (30,000)	○ 학생은 1인 1박 ○ 공무원 및 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설사용료 (진천시설)	무료	무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사용료	무료	무료	50,000	○ 1일 기준	
	강당 냉·난방비	무료	무료	실비	○ 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당시의 유류가격 적용 ○ 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 량에 따라 요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무료	무료	실비		
기타 야영장	시설사용료	무료	무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시설 이용 신청서

이용시설구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진천시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	기타 야영장시설
--------	-----------------------	-----------------------	----------

신청인 소속	기관명		전화						
	주소		FAX						
시설이용 목적	해양활동과정()		임해수련과정()						
	간부수련()		신입생오리엔()						
이용기간	특별활동과정()		특기개발과정()						
	수학여행과정()		교직원 연수()						
	교직원및가족휴양()		기 타()						
	200 . . ~ 200 . . 박 일		식사 (식)	월 일 월 일	조·중·석식 조·중·석식 조·중·석식				
수련원 이용	생활관	구분	남		여		계		
		인원	실	인원	실	인원	실		
		학생 (초·중·고)	명		명		명		
	콘도	인솔교사	명		명		명		
		공공단체 및 기타	명		명		명		
		교직원및가족	명		명		명		
야영장 이용인원		● 학 생 : 초(/), 중(/), 고(/) ● 일반 및 기타 : (/) 계 ()명 ※ (남/여)							
기타 시설사용		※강당 등							
인솔책임자 (신청인)	직 위			자택전화					
	성 명			휴대전화					

귀 수련원(야영장)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수련원(야영장)을 사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학생) : (직인)
 신청인(개인) : (인)

OOO수련원(야영장)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경비징수) 교육연수원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경비징수) 대하여 숙식비</p>
<p>제11조(사용료)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p> <p>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p> <p>3.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료</p> <p>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p> <p>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시설의 이용)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1조의2(사용료) ①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p> <p>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p> <p>2.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학생회관의 이용) ①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생략)</p>	<p>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u>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p>
<p>제26조(사용료) <u>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u></p>	<p>제21조(학생회관의 이용) ①</p> <p>.</p> <p>. . . <u>별지 제1호 서식</u></p> <p>.</p> <p>.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p> <p>②<u>제1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u></p>	<p>제26조(사용료) <u>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u></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32조(시설이용의 허가) <u>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 및 야영장 이용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고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32조(시설이용) ①<u>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u>원장 및 장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장장이 정한다.</p> <p><신 설></p>	<p>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 및 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사용료)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3과 같다.</p>	<p>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p><신 설></p>	<p>제33조의3(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원장 및 장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 및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별첨 4)

의안번호	제 149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1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

제출년월일 : 2003. 11. 1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이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조).
-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붙임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공인교부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중 “교부·재교부”를 각각“등록·재등록”으로하며, 동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 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교육감은 공인을 새겨 이를 교부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교부신청서에 의하여 공인교부기관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공인교부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③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④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고) ① 공인관리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교부기관에 공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공인관리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p> <p>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고) ① 공인교부기관은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단서 신설〉</p>	<p>제7조(공고) 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은 공인의 등록·재등록.....</p> <p>.....</p> <p>②.....</p> <p>.....</p> <p>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공인의 <u>교부·재교부</u> 또는 폐기사유</p> <p>2. <u>교부·재교부</u>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p> <p>3. <u>교부·재교부</u>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p> <p>4. (생략)</p> <p>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생략)</p> <p>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권한의 위임) <u>교육감은 교육장 소속기관 공인의 교부·재교부·폐기의 권한을 그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1. ...<u>등록·재등록</u>.....</p> <p>2. <u>등록·재등록</u>.....</p> <p>3. <u>등록·재등록</u>.....</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별지 제2호서식</p> <p>.....</p> <p><u><삭제></u></p>

(별첨 5)

(제15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11월 12일, 김남훈 교육위원외 2명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위원 김남훈)

가. 발의이유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
-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함.(안 제2조제5항)
-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 함.(안 제7조)
-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간사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별첨 6)

(제15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 함.(안 제11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 2, 제 33조의 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경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교육연수원 경비징수 및 도서관·학생회관 사용료 징수, 학생회관 사용료 감면을, 야영장 사용료 징수 등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제명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조명과 관련하여 조문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명중 '이용' 을 '사용'으로 하고, 별지제3호서식명중 '사용' 을 '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1월 25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조문과 관련하여 조문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안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로 함.
- 별지제3호서식명을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에서 '시설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 제명 중 “이용” 을 “사용” 으로 한다.
- 별지제3호서식명 중 “사용” 을 “이용”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명)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명)..... <u>사용</u> ·
(별지 제3호서식명) <u>시설사용</u> 변경(취 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명) · <u>의안</u>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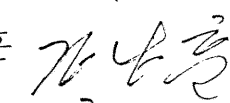
간사

고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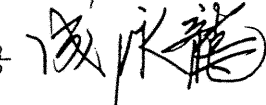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헌



(별첨 7)

(제15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1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과 별지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하단의 「비고」 내용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제3호서식 하단의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1월 25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 표현의 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지제3호서식 하단의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 별지 제3호서식 하단의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별지 제3호 서식</p> <p><u>비고</u></p> <p>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p>	<p>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비고 삭제)</u></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11.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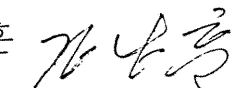
간사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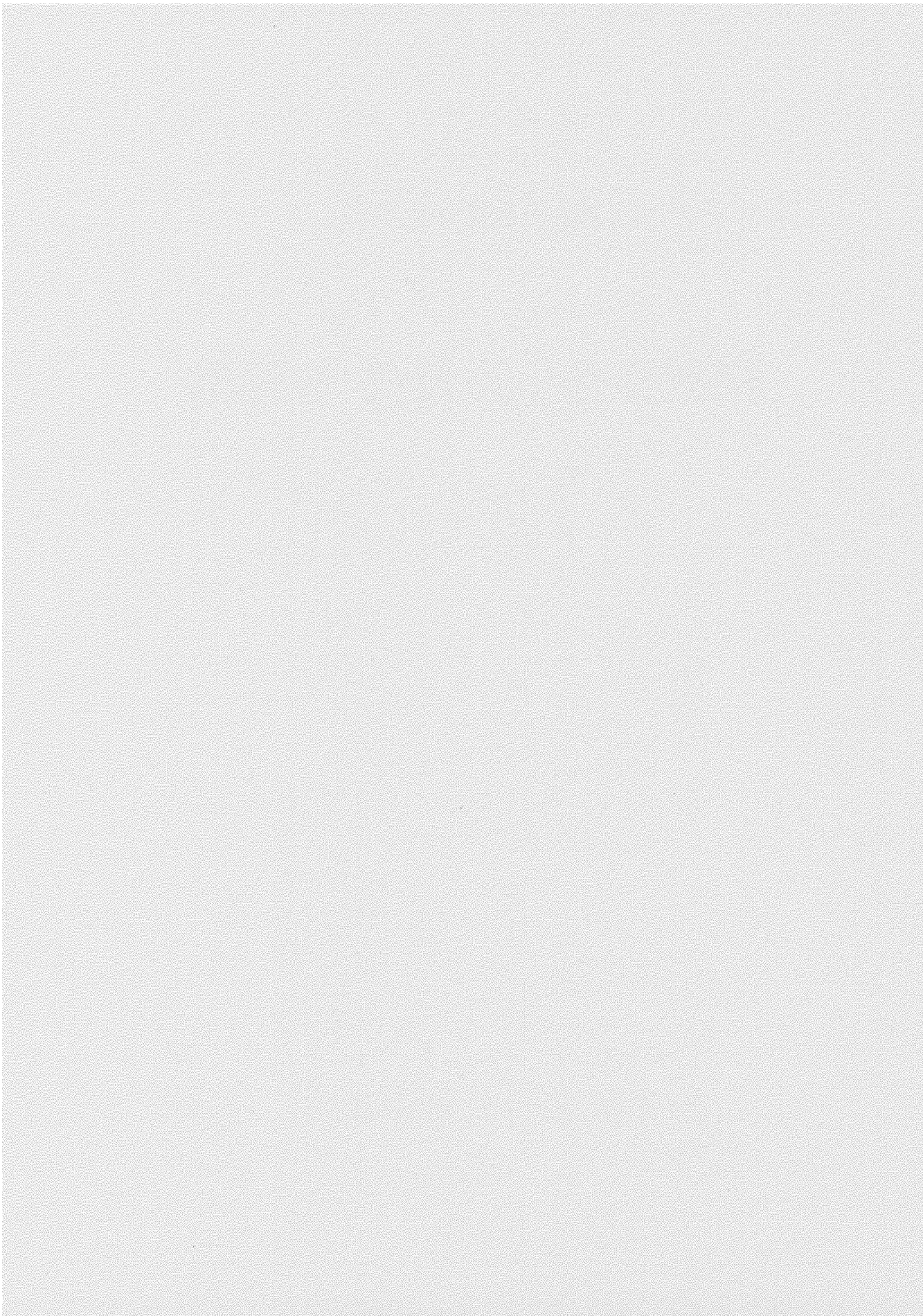
송대현



第15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45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6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11시 06분

議事日程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회) 인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11시 06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이기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기수

방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07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고규강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고규강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규강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규강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소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9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2003년 7월 14일 개정된 같은규정 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용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규강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

● 김남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송대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의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

기관에서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 폐기공인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입니다.

일반 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규강

고규강 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무관리규정중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폐기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도교육감의 공인의 등록, 재등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공인조례는 직속기관, 하급기관, 각 학교 등의 공인을 모두

등록 관리하는 규정으로써 이를 각 기관에서 자체등록, 재등록, 폐기 등을 할 경우에는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영의 규격·관리 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는 같아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기존의 공인조례에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관리규정만을 삽입하여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저희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바뀐 문서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하고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와 있고, 다만 학교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대행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41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하라는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고 이런 것을 배제하라는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학교 것은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다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규격이나 이런 것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영 자체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과거와 틀리게 전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각형이었던 것이 동그랑게도 할 수 있고 타원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간소화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일단 공고화되어서 관보에 등록이 되면 관보에 등록된 사항이 행자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고규강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는 관인인데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관인을 새겨서 각 부처에 모든 것을 통일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 고친 내용을 보면은 각 부처별로 각 장관별로 다르게 한 이 내용이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공인은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2장의 규

정에 불구하고 위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의 조례는 놔두고 전자이미지관인에 관해서만은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중앙부처에 알아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맞나 틀리나 이 법으로 무엇 때문에 41조를 규정을 했습니까? 이게 공인조례로, 공인은 관인하고 부처별로 하던걸 자기들이 고친 걸 내려보낸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도 자기들 마냥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중앙에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또 한가지는 제5조 개정안에 4항을 보면 4항은 절차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거기다 넣지 말고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전자이미지공인대상 비고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절차상에 4항에 그러니까 4항은 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에 관한 게 들어간 거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지금 재해석을 해서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받은 교육부지침과 틀리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과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과조치내용에는 현재 등

록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본 규정에서 등록된 경로 보는 경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침과 다르게 이 내용을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상부에 교육부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안건을 처리하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알아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정회를 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다음에 속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다른 안건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정회한 후에 다시 우리가 속개해서 이 안건을 제일 끝에 가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 간사 고규강

끝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본 안건은 끝에 처리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현행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둘째,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송대헌 위원님 없습니까?

● 송대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성영용 위원님?

● 성영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

● 김남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고규강 위원님.

● 간사 고규강
고규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당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조례로써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던가 그런데 왜냐 하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살펴보면, 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고, 제130조 규정에서는 조문제목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으로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있어, 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면 충청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 관한 조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조례를 현행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용하는 규정이지 사용료 징수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고, 충청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에서부터 별표까지 전부를 신규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례로 일부 수정을 하거나 전면 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신규로 제정을 하지 못하면 위원발의로 해서라도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충청북도교

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가 제정 당시부터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사용료를 근거로 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료하고 사용료가 저희들이 법정용어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활용을 할 때에는 이용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조례에서 택했고, 그 이용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산과목하고 맞추어서 사용료라는 용어를 써서 현재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할 때에는 전부 다 이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택했고 다만 돈을 받아들일 때는 수수료 쪽으로 수수료보다는 사용료라는 용어로 택했기 때문에 활용한다할 때하고 돈을 대가를 받을 때하고 용어의 차이, 그것이 꼭 사용료로 조례를 해야 되고 이용료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용료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이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용어에는 그래서 이용을 할 때에는 이리이러한 조건들을 꼭 달았고 또 그 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사용료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각 시·도의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건데 일부 제주나 인천 등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내용상에 사용료를 썼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예 제목에다 사용료라는 말을 써서 만든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그냥 사용이라는 말을 사용료를 안붙이고 사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쓴데도 있고, 아니면 운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조례를 만들고 그 내용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을 활용할 때는 이용 돈을 받을 때는 사용료로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에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사용료 등의 징수조례 등 해 가지고 법령용어로 딱 찍어준 걸 사용했으면 더 좋았고 이런 혼동이 없었을 걸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의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부터 130조에 이르기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하되 그 사용료징수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받으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종전의 조례도 127조 내지 130조에 근거해서 일단 법적 근거는 갖췄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목을 이용에 관한 조례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간사 고규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토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범주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에 상위법에서 지정한 것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130조에 여기 개정이유에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130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고, 130조 규정을 자치법에 보편은 조문제목이 사용료의 징수조례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상위법에서 정해 준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냐 그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130조의 조문에서는 조례의 명을 딱 박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해석을 이제 협의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조례이름을 사용료의 징수조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료징수 부분을 포함하느냐 부분은 그건 입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알기가 쉽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다면 제목 정도는 사용료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간사 고규강**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선학교의 운동장과 또는 테니스장 모든 것을 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근데 조례에 그게 없어요. 사용료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어떤데는 교회에서 사용하면 3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친목회로 씁니다. 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에 관한 조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료에 관한 법적 조문과 같이해서 만들어서 해당학교에도 어떤 범위를 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료를 넣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 모든 시설 모든 재산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조문에 제명한 대로 사용료라고 그래야지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이중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법에 정해진 대로 사용료로

전면 개편해서 학교까지 해당학교에까지 이런 사용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학교에서 테니스장을 할 적에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디로 입금 이런 절차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도저히 이 조례를 지금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의 이용했을 때에 대가를 받는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미비된 것만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과에서 지금 부의장님께 지적하신 학교시설을 활용했을 때의 사용료징수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걸 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부령이나와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장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마련해서 곧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다만 요 지금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쪽 망라하고 그 이용에 관해서 수수료를 내라는 부분을 넣느냐 아니면 아예 법령에서 조례명에서 조례를 아예 조례로 사용료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징수중심으로 갖 것이냐라는 그 체계를 바꾸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은 이용료에 관한 부분을 이용에 대한 용어를 사용료로 조금 변경을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고규강

조례의 제목은 이용에 관한 걸로 해놓고 전부 보면 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사용료, 수련원, 야영장, 사용료의 감면 이용료라고 그러지 거기도 왜 사용료라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이용에 관한 거면 이용료라고 그래야지 사용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목은 하고 조

례명을 그리고 안에 규정한 사항은 우리 시설에 대한 이용한 후에 사용에 대한 금액을 주로 규정한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료로 해 갖고서 조례를 용어변동을 해 갖고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간사 고규강**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 **위원장 이기수**

그러시면 우리가 회의시작한지 한 40분 됐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지금 교육부에 질의한 사항도 확인할 겸 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별지3호 서식에 제명중 사용을 이용으로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고규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우선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관안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 총무처에 저희들이 입안자한테 이것을 내용을 알아본 결과, 관인은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되므로 어느 기관에서 공고를 하던 공고함으로써 효과발생이 되기 때문에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서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하던 것을 하급기관 당해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사 고규강**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5조의 4항 절차상인데 그거는 삭제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비고란에 절차가 전부 들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항에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란에 전부 절차가 적혀 있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중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은 별지3호 서식에 나와 있는 비고란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간사 고규강

총무과장님, 절차상의 문제니까 조례에는 안들어가도 괜찮요. 비고란에 거기다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건 조례에 절차니까 어떻게어떻게 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절차니까 거기다 비고란에 놔두고 4항은 조례에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물론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좀더 관계조문에 명확하게 해놓고, 비고란은 어디까지나 그건 비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이미지 같은 것은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혼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남훈 위원

그럼 비고란은 삭제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비고란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5조4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 총무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고란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함 감사합니다.
니다.

(12시 11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고규강,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0 출석공무원 : 7명

의사국장 이상기,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의사과장 김용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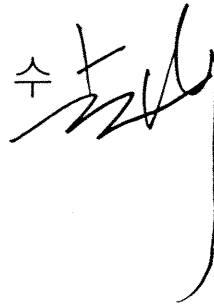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위원장

이 기 수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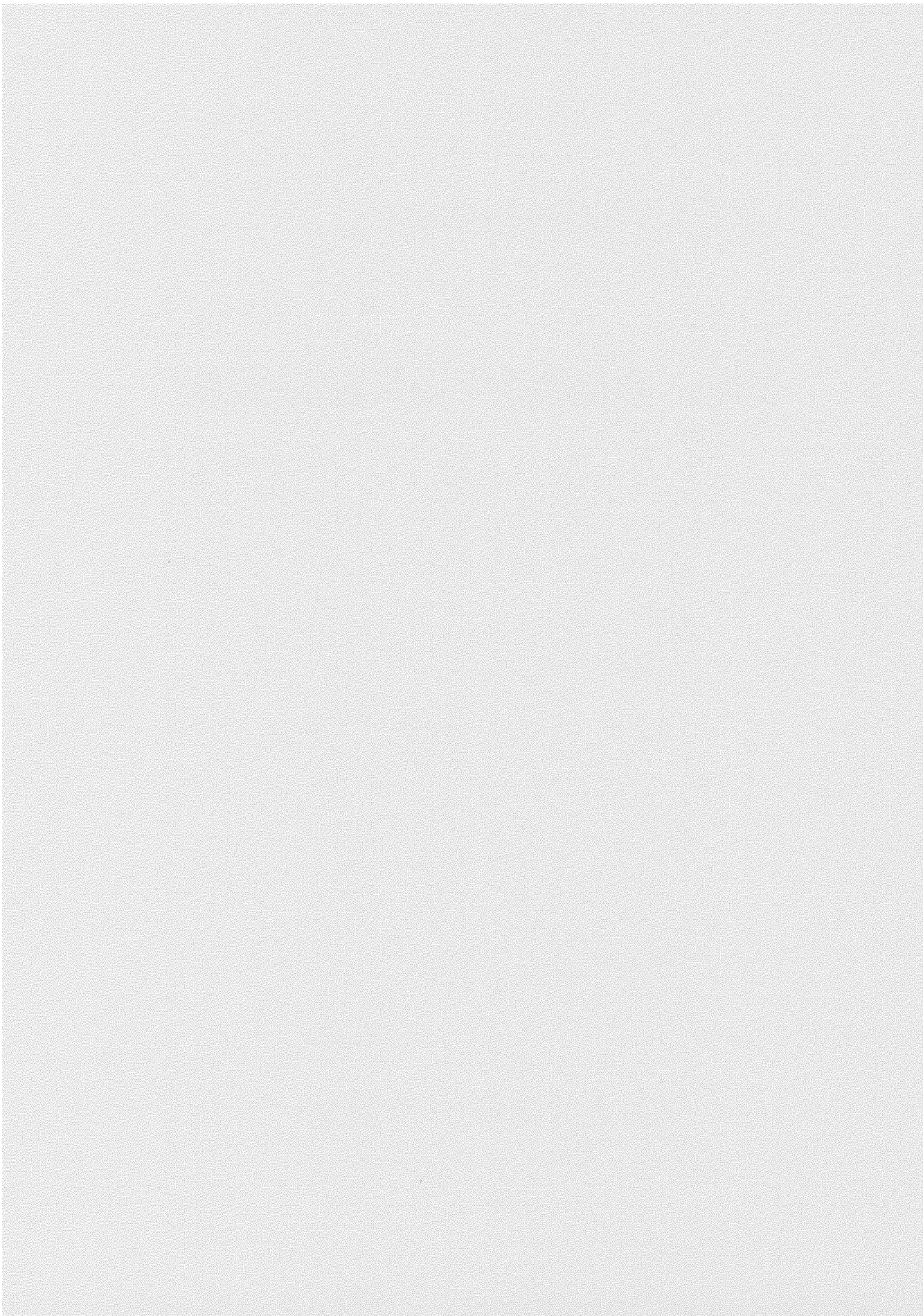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11.24. (월) 11: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第15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懲戒・資格審査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167

II. 부 록

1.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173

懲戒・資格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21일 (금요일) 11시 50분

議事日程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시 5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앞은 대로 송대헌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가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제4대까지 오는 동안에 동료위원이 징계에 상정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제가 잘 수렴하도록 해서 적절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52분)

● 위원장 송대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웅 위원

김남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을 도와 간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53분)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1시 54분)

● 위원장 송대헌

의사일정 제4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1시 5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1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송대헌

회의숙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밖에 나가셨던 관계관계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은 동료위원으로서 초선이고 자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제159회-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김남훈,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 부 록

- ▶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위원장

송대현



(별첨 1)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11.21. (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 건	

